

➤ 이직자 여러분께 ◀

◆이 팸플릿은 이직자 여러분께 특히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헬로워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직표-2'의 뒷면도 함께 정독해 주십시오.

※수급 수속에는 개인번호 확인서류(마이넘버카드 등)가 필요합니다.

① 고용보험의 구직자급부란?

고용보험의 실업등급부에는 실업하신 분이 안정된 생활을 하며 하루빨리 재취직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부로서 '구직자급부'가 있습니다. '구직자급부'에는 일반 피보험자에 대한 '기본수당', 고연령 피보험자(※1)에 대한 '고연령 구직자급부금', 단기고용특례 피보험자(※2)에 대한 '특례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이하, 가장 대표적인 '기본수당'(소위 실업수당)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수속에 대해 설명합니다.

※1 65세 이상인 분으로서 특례 피보험자 및 일용노동 피보험자 이외의 분

※2 계절적 업무에 한정된 기간 동안 고용된 분, 계절에 따라 취직 및 이직을 하고 계신 분

실업상태여서 바로 일할 수 있는 분은 **수급자격결정** 수속을

병, 출산, 육아, 불임치료, 질병 등으로 바로 일할 수 없는 분은 **수급기간연장** 신청을

②이후를 참조하십시오

4 페이지의 ⑩을 참조하십시오

② 실업상태여서 바로 일할 수 있는 분이란?

이직하여 '취직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사와 언제든지 취직할 수 있는 능력(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되지 않는 상태'인 분을 말합니다.

③ 다음과 같은 분은 원칙적으로 구직자급부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자급부(기본수당 외)는 재취직을 목표로 하는 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분께는 지급되지 않으나 그 상태에 따라 지급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헬로워크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① 가사에 전념하는 분
- ② 주간 학생 또는 주간 학생과 동일한 상태로 인정되는 등 학업에 전념하는 분
- ③ 가업에 종사하여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분
- ④ 자영업을 개시하였거나 자영업 준비에 전념하는 분(구직활동 중에 창업 준비 및 검토를 하는 분은 지급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⑤ 다음 취직이 결정된 분
- ⑥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 단기간 취로만을 희망하는 분
- ⑦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
- ⑧ 회사의 임원 등으로 취임한 분 (취임 예정이거나 명의뿐인 임원도 포함)
- ⑨ 취직, 취로 중인 분(시용기간 포함)
- ⑩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중인 분(※주당 노동시간이 20시간 미만인 경우, 취로한 날, 수입액 신고가 필요하나, 그 외 실업상태인 날에 대해서는 기본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⑪ 동일 사업소에서 취직과 이직을 반복하고 있고, 다시 동일 사업소에 취직할 예정인 분



④ 구직자급부를 받는 수속은

고용보험의 구직자급부를 수급하려면 여러분의 주소를 관할하는 헬로워크(8 페이지 참조)에 본인이 구직신청(7 페이지 참조) 등의 수속을 해 주십시오.

또한 주로 도도부현 내의 다른 헬로워크에서 구직활동을 할 분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수속에 필요한 것

1. 이직표-1 성명과 계좌번호 등을 기입해 주십시오.(아래 기입에 참조)
단, 개인번호란은 헬로워크를 방문한 후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기재해 주십시오.
2. 이직표-2
3. 마이넘버카드
마이넘버카드가 없는 분은 다음의 ①개인번호 및 ②신원(실재)확인서류를 지참해 주십시오.
 - ① 개인번호 확인서류(아래 서류 중 하나)
통지카드, 개인번호가 기재된 주민표(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
 - ② 신원(실재)확인서류((1) 중 하나.
(1)의 서류가 없는 분은 (2) 중 다른 두 종류(사본 불가))
 - (1)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관공서가 발행한 신분증명서 또는 자격증명서(사진 포함) 등
 - (2) 공적의료보험의 피보험자증, 아동부양수당증서 등
4. 본인 인감(인감 이외 도장 가능, 스탬프도장 이외)
5. 사진 2 장(최근사진, 정면 상반신, 세로 3.0 cm×가로 2.5 cm
1 장은 이직표-2 에 있는 사진첨부란에 붙여 주십시오)
※ 본 수속 및 이후에 진행할 지급 신청 때마다 마이넘버카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얼굴사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일부 금융기관 제외)
단, 금융기관지정신고서에 금융기관의 확인 도장이 있으면 통장은 필요 없습니다.
7. 선원이었던 분은 선원보험실업보험증 및 선원수첩

기입 예

求職者給付等払渡希望金融機関指定届					
届出者	フリガナ	ロドドウ	タロウ		
1	氏名	労働 太郎			
2	住所又は居所	東京都千代田区霞ヶ関1の2の2			
払渡希望 金融機関	フリガナ	○×ギンコウ	△◇シテン	金融機関 確認 印 	
	3	名称	○×銀行 △◇支店		
	4	銀行等	口座番号		1234567
5	ゆうちょ銀行	記号番号			
				金融機関コード	
				店舗コード	
				9 8 7 6 3 4 5	

◆선원이었던 분이 이직 후 계속해서 선원으로 취직을 희망하는 경우는 지방운수국에서 구직신청 수속을 부탁 드립니다.

⑤ 구직자급부를 받을 자격은 【기본수당의 수급 자격】

- ◆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2년 동안 2개월 이상 피보험자 기간(※1)이 있는 분.
 - ◆ 도산, 해고 등으로 인한 이직(특정수급자격자에 해당), 기간이 정해진 노동계약이 갱신되지 않았거나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한 이직(특정이유이직자에 해당)인 경우(※2)에는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6개월 이상 피보험자 기간이 있는 분.
 - ※1 피보험자 기간이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던 기간 중 이직일부터 1개월씩 나눈 기간에 임금 지불의 기초가 된 일수가 11일 이상 되는 달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또한 레이와 2년 8월 1일 이후 이직한 분 중, 임금지불 기초일수가 11일 이상인 달이 12개월이 안되는 경우는 임금지불의 기초가 된 시간수가 80시간 이상인 달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 ※2 특정수급자격자 및 특정이유이직자에 대한 내용은 3페이지의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복수의 이직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단기간의 이직표도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 ★ 고연령 피보험자였던 분에게 지급되는 고연령 구직자급부금, 단기고용특례 피보험자였던 분에게 지급되는 특례일시금은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6개월 이상의 피보험자 기간이 필요합니다.

⑥ 1일당 급부액 【기본수당 일액】

실업상태인 날에 수급할 수 있는 1일당 금액을 '기본수당 일액'이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의 6개월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지불된 임금의 합계를 180으로 나눠 산출한 금액('임금 일액'이라 함)의 약 50~80%로, 임금이 낮은 분일수록 급부율이 높습니다. 또한 기본수당 일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대략적인 계산식

$$\left(\frac{\text{이직 이전 6개월의 임금합계}}{180} \right) \times (50 \sim 80\%) \times \text{급부율} = \text{【기본수당 일액】}$$

※ 60~64세인 분은 45~80%

⑦ 기본수당의 급부일수

◆ 정년, 계약기간 만료,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인 분

이직 시의 만연령	피보험자 였던 기간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65 세 미만	90 일	120 일	150 일

◆ 특정수급자격자·일부 특정이유이직자

이직 시의 만연령	피보험자 였던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90 日	30 세 미만	90 일	120 일	180 일
30 세 이상 35 세 미만	120 일		180 일	210 일	240 일	
35 세 이상 45 세 미만	150 일			240 일	270 일	
45 세 이상 60 세 미만	180 일		240 일	270 일	330 일	
60 세 이상 65 세 미만	150 일		180 일	210 일	240 일	

◆ 장애인 등 구직곤란자

이직 시의 만연령	피보험자 였던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45 세 미만	150 일	300 일
45 세 이상 65 세 미만		360 일

다음 분들께는 일시금을 일괄 지급합니다.

◆ 고연령 피보험자(65 세 이상에 퇴직한 분)

피보험자였던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고연령 구직자급부금 액수	30 일분	50 일분

◆ 단기고용특례 피보험자(계절적 업무에 종사하던 분)

특례일시금 액수	40 일분 (잠정적 조치)
----------	-------------------

※ ‘피보험자였던 기간’에는 이번에 퇴직한 사업소 이전의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던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산할 때는 일정한 조건이 있으므로 헬로워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지급 개시와 기간 【대기】 【급부제한】 【수급기간】

이 직 이 유	해고, 정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개인사정, 징계해고로 이직
지급 개시	이직표를 제출하고 구직신청을 하고나서 7 일간의 실업상태인 날(대기) 이 경과한 후	이직표를 제출하고 구직신청을 하고나서 7 일간의 실업상태인 날(대기)+3 개월(급부제한) 이 경과한 후
수 급 기 간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년간 1년 동안 소정급부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수급기간이 지나버리면 급부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되도록 빨리 수속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수당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4 주에 한 번 있는 인정일에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고연령 피보험자였던 분에게 지급되는 고연령 구직자급부금의 수급기한(지급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 년이 경과한 날**, 단기고용특례 피보험자였던 분에게 지급되는 특례일시금의 수급기한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6 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⑨ 특정수급자격자, 특정이유이직자란?

◆ ‘특정수급자격자’, ‘특정이유이직자’란?

특정수급자격자란 도산, 해고 등의 이유로 인해 재취직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 없이 이직할 수밖에 없게 된 분을 말하며, 특정이유이직자란 특정수급자격자 이외에 기간이 정해진 노동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것, 또는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이직한 분을 말합니다. 각각 해당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특정수급자격자’, ‘특정이유이직자’의 해당 여부 판단

특정수급자격자 또는 특정이유이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직이유에 따라 헬로워크가 판단합니다. 이직이유는 사업주가 주장하는 이직이유와 이직자가 주장하는 이직이유를 파악하고, 각각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한 후 최종적으로 헬로워크가 신중히 판단합니다.

특정수급자격자 및 특정이유이직자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헬로워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팸플릿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35026.html>

※ 유기계약을 반복 갱신 중인 분(계약기간 총 3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이 단기간으로 바뀌는 등 노동조건이 저하되었고 더불어 본인이 계약의 갱신을 희망하였음에도 불갱신조항이 붙은 경우 등은 특정이유이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⑩ 바로 일할 수 없는 분은...65 세 미만 퇴직한 경우는 【수급기간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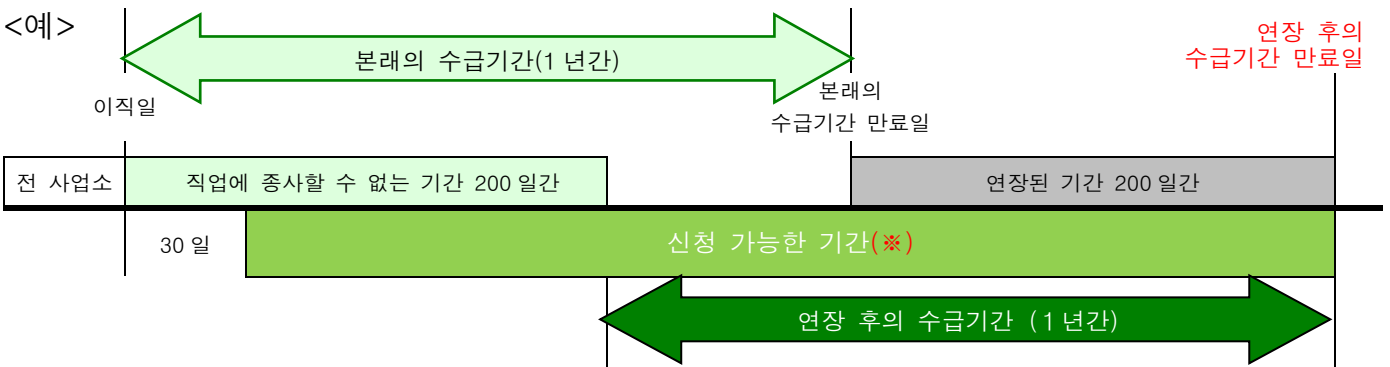
이직 후 1 년의 기본수당 수급기간 내에 하기의 이유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30 일 이상 계속된 경우는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급부의 수당을 희망하는 분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 ① 질병,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건강보험의 상병수당, 노재보험의 휴업보상을 수급 중인 경우 포함)
- ② 임신, 출산, 육아(3 세 미만)에 한함) 등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불임치료 포함)
- ③ 친족의 간호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경우
- ④ 60 세 이상의 정년 등으로 이직하여 당분간 휴양 예정인 경우(선원이었던 분은 연령요건이 다릅니다)

수급기간 연장의 신청 수속

연장이유	질병이나 부상, 임신, 출산, 친족의 간호 등	60 세 이상의 정년 등
신청기간	이직일(일할 수 없게 된 날) 다음날부터 30 일이 지난 후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장 후 수급기간의 마지막날까지의 기간중에는 신청은 가능	이직일 다음날부터 2 개월 이내
연장기간	(본래의 수급기간) 1 년 + (일할 수 없는 기간) 최장 3 년간	(본래의 수급기간) 1 년 + (휴양하고자 하는 기간) 최장 1 년간
제출서류	수급기간연장신청서, 이직표-2, 본인 인감(인감 이외 도장 가능, 스탬프도장 이외) 연장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방법	본인 방문, 우편, 대리인(위임장 필요)	원칙적으로 본인 방문
제출처	주소를 관할하는 헬로워크(수급자격 결정 후에는 해당 수급자격을 결정한 헬로워크)	



※ 신청 가능한 기간이어도 신청이 늦은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장해도 기본수당의 소정급부일수 전부를 수급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연령 피보험자였던 분에게 지급되는 고연령 구직자급부금, 단기특례 피보험자였던 분에게 지급되는 특례일시금은 수급기한(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⑪ 연금과의 동시 지급 조정에 대하여

65 세 미만인 분에게 지급되는 특별지급의 노령후생연금 및 퇴직공제연금과 고용보험의 기본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수당을 수급하기 위해 구직신청을 하면 기본수당의 수급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노령후생연금 및 퇴직공제연금이 전액 지급 정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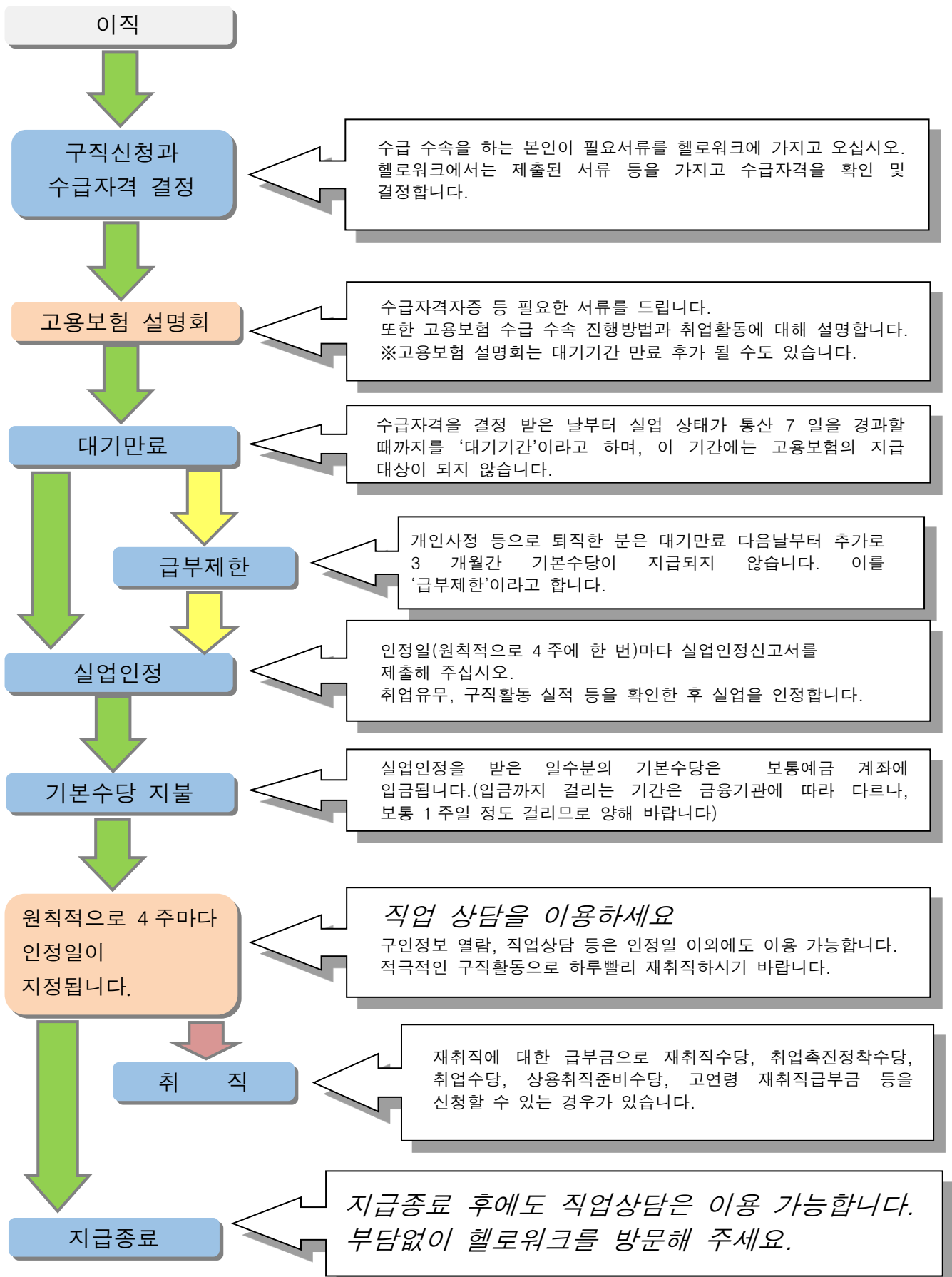
자세한 것은 가까운 일본연금기구의 각 연금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⑫ 국민건강보험료(세)의 경감에 대하여

특정수급자격자, 특정이유이직자로서 기본수당을 받는 분의 국민건강보험료(세)를 경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연령 수급자격자, 특례 수급자격자는 경감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감을 받으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는 시정촌의 국민건강보험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⑬ 수급 수속의 흐름



⑭ 조기 재취직 시에 지급되는 수당

헬로워크에 구직신청(이직표 제출)을 하고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조기에 안정된 직업에 취직(※) 분께는 재취직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직일 전날까지의 실업 인정을 받은 후, 수급기간 내에 남아 있는 기본수당의 지급일수(지급 잔일수)가 소정급부일수의 3 분의 1 이상[3 분의 2 이상] 되는 경우는 지급 잔일수의 60%[70%]에 상당하는 일수에 기본수당 일액을 곱한 액수(1 엔 미만은 버림)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나 사업주가 되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를 고용하는 경우 등.

더불어, 재취직수당을 지급 받은 사람이 계속하여 그 재취직처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또한 재취직처에서 6개월간 지불된 임금이 고용보험의 급부를 받기 전의 임금에 비해 낮아진 경우, 취업촉진정착수당의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기간 내에 소정급부일수의 3 분의 1 이상 및 45 일 이상을 남기고 재취직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상용고용 등 이외의 형태(1년을 초과할 전망이 없는 고용)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취업일마다 기본수당 일액의 30%(1 엔 미만은 버림)의 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모든 수당은 연령에 따라 기본수당 일액에 상한액이 있습니다.

이직이유로 인해 급부제한을 받은 분은 대기기간 만료 후 1개월간은 헬로워크 또는 직업소개사업자의 소개로 취직한 경우에만 재취직수당 및 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상기 수당 외에도 '상용취직준비수당'이 있습니다. 각 수당의 지급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헬로워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0 세 이후에 재취직 한 분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0 세 이상 65 세 미만(※)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고연령 고용계속급부가 지급됩니다. ※선원은 생년월일에 따라 55 세 이상 60 세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고연령 고용계속급부에는 고연령 고용계속기본급부금과 고연령 재취직급부금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연령 고용계속기본급부금은 고용보험의 기본수당 등(재취직수당 등의 기본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급부를 포함)을 지급 받지 않고 재취직 한 분이 대상이 되는 급부금입니다. 60 세 도달 후 매달 임금이 60 세 도달 시의 임금에 비해 75% 미만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매달 지불된 임금의 15%를 한도로 하여 임금 저하율에 따라 지불됩니다)

고연령 재취직급부금은 이직 후에 기본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60 세 이상 65 세 미만인 분이 지급일수를 100 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1년을 초과하는 고용 예정)하였고, 재취직 후의 매달 임금이 임금 일액의 30 일분과 비교해 75% 미만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매달 지불된 임금의 15%를 한도로 하여 임금 저하율에 따라 지불됩니다) 단, 재취직수당(상기⑭)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재취직의 첫걸음은 우선 자신을 잘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헬로워크에서는 지금까지의 이력을 되돌아보고 정리하여 여러분의 요구에 맞춘 직업상담과 구인정보, 응모서류 작성에 관한 어드바이스, 직업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취직을 위해
헬로워크를 활용하여
직업상담을!!

구직신청 수속 안내

구직신청 수속은 모든 헬로워크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수급 수속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소를 관할하는 헬로워크에서 수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20년 1월 6일부터 구직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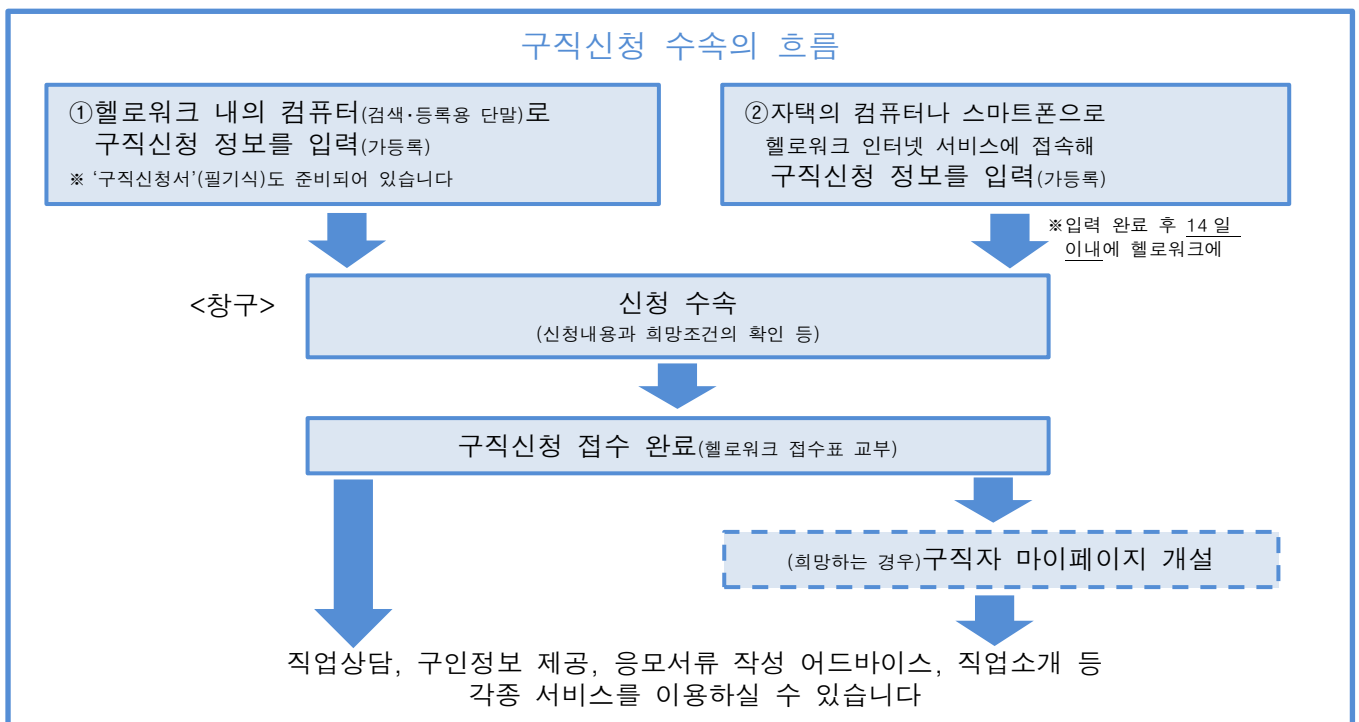
신청방법①: 헬로워크 내에 설치된 컴퓨터(검색·등록용 단말)로 구직신청 정보를 입력(가등록)한 후, 창구에서 신청 수속.

※ 구직신청서(필기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②: 자택의 컴퓨터나 태블릿, 스마트폰으로 '헬로워크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해 사전에 구직신청 정보를 입력(가등록)한 후, 헬로워크를 방문해 신청 수속.

※ 입력(가등록) 완료 후 14일 이내(기한일이 폐관일인 경우에는 이전 개관일까지)에 헬로워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 자택 등에서 미리 가등록을 하면 헬로워크를 방문했을 때 더 신속하게 수속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 마이페이지 안내(2020년 1월 6일~)

헬로워크 인터넷 서비스상에 '구직자 마이페이지'를 개설하면 자택의 컴퓨터나 태블릿, 스마트폰으로 이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일을 찾기가 더 편리해집니다. 개설을 희망하시는 분은 2020년 1월 6일 이후에 창구에 말씀해 주십시오.

- 구인 검색 조건과 관심 있는 구인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 헬로워크에서 소개한 구인내용과 응모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메시지 기능을 통해 응모한 구인의 담당자와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워크에서 구인정보와 안내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 구직자 마이페이지는 헬로워크 및 헬로워크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직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분을 대상으로 구인정보의 검색, 열람 등 일을 찾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구직자 마이페이지'를 개설하려면 헬로워크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이 무효가 된 경우,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 마이페이지를 개설하려면 로그인 계정으로 사용할 메일 주소(컴퓨터, 스마트폰 등)가 필요하므로 창구에서 등록해 주십시오. 또한 이용규약 및 개인정보방침에 동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처 일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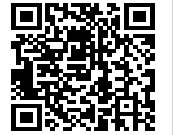
집에서 가까운 헬로워크는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mhlw.go.jp/content/000637894.pdf>



통역사가 있는 헬로워크는 아래를 참조

<https://www.mhlw.go.jp/content/000592865.pdf>



노동 조건에 대해 상담하고 싶을 때

https://www.check-roudou.mhlw.go.jp/soudan/foreigner_eng.html

